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3.04.1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성관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에는 직원, 연구(보조)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지원
2. 대학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지원
3. 대학 지표 및 성과관리 기본 계획 수립
4. 대학 지표 및 성과평가, 환류 체계점검 및 질 관리
5. 대학 지표 및 성과 데이터 분석 및 관리
6. 각종 평가항목별 지표 및 성과관리
7. 기관평가인증 지원
8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위원회) ① 중장기발전계획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장기추진점검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 자체평가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.

③ 자체평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④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⑤ 해당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